

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이수명령 공고

「화장품법」 제5조제4항,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고시 제2013-180호, '13. 4.29.)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이수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3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□ 교육 대상자

- 「화장품법」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

□ 교육 실시기관

- 「화장품법」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

<화장품 교육실시기관>

연번	명칭	대표자	소재지
1	(사)대한화장품협회	서경배	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6호(여의도동, 금산빌딩)
2	(사)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	이정규	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, 1801 (삼성동, 무역센터)
3	(재)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	서경배	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84-5 가장2산업단지 내
4	한국보건산업진흥원	고경화	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

□ 교육 내용

-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

-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-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
-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별표2에 따른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
- 「화장품법」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

□ 교육 이수기간 및 기준

- '13.12.31.까지 교육실시기관에서 「화장품법」 제5조제4항,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
 - * 교육이수명령 이전 교육실시기관에서 「화장품법」 제5조제4항,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도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 이수한 자로 인정토록 함.

□ 기타

- 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 이수하지 않을 경우 「화장품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